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2. 30(목)

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175호

나. 제출자 : 운영회의원(대표발의), 김경완의원, 조윤형의원, 강수정의원

다. 제출일자 : 2021. 12. 23.

라. 회부일자 : 2021. 12. 23.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록투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나.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11조)

다. 표결 시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원칙(안 제47조)

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심사규정 반영 (안 제65조)

마. 주민조례청구 이의신청 및 수리·각하의 심의·결정을 위해 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안 제66조, 제67조)

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의견제출 규정 신설(안 제90조, 제91조, 제9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21. 12. 23. ~ 12. 28.(의견 없음)

라. 기 타

1) 일부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첨부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의 인용 조문과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게 된 사항임.
- 안 제12조에서는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47조에서는 표결방법에 있어 현행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 조항을 개정 표결에서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조항을 변경하였음.
- 안 제65조에서 제67조까지는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과 이의신청, 수리 및 각하의 심의·결정을 위해 의회 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90조에서 제92조까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해촉·제척·회피와 의견수렴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위임사항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회의규칙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법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된 내용과 관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한 내용으로 본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본 규칙안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2.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3.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4.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5.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6.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7.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1.시·도: 15일 이상
- 2.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